

2026학년도 학과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전사고 예방 지침

I 교내외 학과행사 예절 지침

- ① 기본 복장
 -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, 노출이 심한 복장은 금지합니다.
- ② 과도한 음주 금지
 -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음주는 절대 금지합니다.
- ③ 기타
 -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위자는 학칙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II 교내외 학과행사 안전 지침

- ① 인권 침해(폭행, 폭언, 음주 강요 등 일반 상식을 벗어난 행위)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, 협조자, 방관자는 학칙에 의해 처벌합니다.
- ② 차량 이용 안전 수칙
 - 차량에는 인솔 교직원이 반드시 탑승하여 안전운행을 지도하여야 합니다.
 - 차량 이용자는 차량 내에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.
- ③ 숙박 시설 안전 수칙(화재, 전기, 취사, 식중독 예방)
 - 숙소의 화재 안전 대피로를 반드시 확인하고, 소화기와 비상구를 확인합니다.
 - 숙소에서는 지정된 주방에서만 취사하며, 전열 및 가스도구는 매뉴얼 숙지후 사용합니다.
 -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먹습니다.
 - 숙소에 비치된 물품은 불필요하게 이동시키거나 밖으로 반출하지 않습니다.
 - 숙소의 개인물품은 수시로 정리 정돈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.
- ④ 단체 활동(레크레이션 등) 안전 관리
 - 교내외 학과 행사시 개별 행동을 삼가고, 단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.
 - 단체활동 시에는 몸 상태(과음, 질병 등)를 확인 후 본인의 의사로 참여합니다.
 - 단체활동 시에는 이용 장소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합니다.
 - 상처를 입거나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학생 안전관리대표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.
- ⑤ 기타
 - 안전관리 대표자는 수시로 교내외 학과행사 참가학생의 안전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, 학과 인솔자 또는 학생지원팀(☎(031) 249-6231~4, 244)에 보고합니다.

III 교내외 학과행사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지침

- 교내외 학과행사 기간 중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·성폭력에 대비하여 예방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성인 남자(여자) 및 동급의 남학생(여학생) 등 성희롱·성폭력 피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다음의 성희롱·성폭력에 대한 지침을 읽어보시고 예방에 만전을 기합니다.

- ① 기본 사항
 - 친구 사이에 예절바른 언어를 사용한다.
 - 서로 신체에 대해 놀리지 않는다.
 -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지 않는다.
 - 노출이 심한 옷은 되도록 삼가며,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.
- ② 이런 것이 성적언동입니다.
 - ☞ 육체적 성적 언동
 -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
 -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
 - 가슴,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 - ☞ 언어적 성적 언동
 -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
 -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
 -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
 -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
 -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 -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
 - ☞ 시각적 성적 언동
 - 외설적인 사진, 그림, 낙서,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
 -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
 -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, 사진, 그림을 보내는 행위
 - ☞ 기타
 -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
- ③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
 - ☞ 반드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도록 한다.
 - 대부분 성희롱을 행한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함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게 된다.
 -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(즉,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)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친구들을 부른다. 혹은 그 자리를 피하도록 한다.
 - ☞ 항의를 한다.
 -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을 중지하는 것이다. 성희롱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일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.
 - ☞ 만일의 경우 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(☎(031) 249-6235~6), 학과 인솔자, 학생지원팀(☎(031) 249-6231~4, 244)로 빨리 도움을 요청합니다.